

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(21년 6월)

2021. 6 / 저작권상담팀 ☎ 1800-5455)



(단어의 크기가 클수록 월간 질의가 많이 온 것을 의미함)

- (월간 워드 클라우드)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이용된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 100개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
- (월간 주요 상담사례) 월간 워드 클라우드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(제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단어 각 5개, 총 10개)와 관련한 저작권 상담사례를 요약 정리

순위	제작물 종류별	기타
1	영상	이용
2	사진	등록
3	영화	제작
4	그림	유튜브
5	폰트	침해

※ 공유마당(<https://gongu.copyright.or.kr/>)의 한국환경공단 '환경체 B' 글꼴로 작성

< 저작물 종류별 주요 상담 >

- (영상) 내가 출연한 TV프로그램 영상에서 출연 장면을 잘라 홍보에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인가?
 -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.¹⁾ 따라서 본인이 출연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.

- (사진) 롯데월드타워를 주요 피사체로하여 사진을 촬영한 후, 티셔츠에 인쇄하여 판매하면 문제가 되는가?
 - 저작자의 창작성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건축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, 이를 판매 목적으로 복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.²⁾

- (영화) 카페에서 최근에 상영한 영화를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벽면에 틀어 주려고 한다. DVD를 구매하여 이용할 예정이고, 영화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으며, 소리 없이 움직이는 배경 정도로 이용할 예정인데 문제가 되는가?
 - 카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공연이 불가능하다.³⁾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DVD 구매나 음의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된다.

- (그림)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그림을 이용해 상품을 제작하고자 하

1) 저작권법 제46조.

2)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제4호.

3)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,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.

는데 아직 유족이 생존 중이라면 유족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?

-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 동안과 사후 70년까지만 보호된다.⁴⁾ 따라서 유족이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저작권이 소멸하기에 별도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된다.

○ (폰트) 최근 폰트로 인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다.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폰트들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?

- 위원회 공유마당⁵⁾에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폰트를 확인할 수 있고, 각 폰트마다 설정된 이용 범위와 조건 내에서 이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.

< 기타 주요 상담 >

○ (이용)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저작물의 권리와 협의 중이다. 저작물의 이용료에 대해 법상 정해진 기준이 있는가?

- 저작권법상 이용료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. 의견 차이로 인해 협의가 어렵다면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.⁶⁾

○ (등록) 경찰서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니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어야 보호받는다고 한다.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는가?

-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.⁷⁾ 따라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.

4) 저작권법 제39조

5) <https://gongu.copyright.or.kr>

6) <https://www.copyright.or.kr/business/mediation/adjustment/index.do>

7)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.

- (제작) 외국에 있는 한인단체가 한국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제작할 경우 한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가?
 - 저작권 관련 사안에 있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(베른협약)에 가입된 나라의 저작물이라면,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.⁸⁾ 따라서 한국인의 저작물이라도 외국에서 이용할 때는 그 외국의 법을 따라야한다.

- (유튜브) 특정 콘셉트의 영상이 인기를 끌면 이를 따라하는 유튜버들이 많은데 콘셉트를 따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?
 - 저작권법은 콘셉트와 같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(영상, 글 등)을 저작물로서 보호 한다. 따라서 콘셉트만 따라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.

- (침해) 학교 행사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캡처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문제가 되는가?
 -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, 그 이용허락의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.⁹⁾ 따라서 해당 기사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지 않고 캡처하여 업로드한다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.

※ 공유마당(<https://gongu.copyright.or.kr/>)의 한국환경공단 '환경체 R' 글꼴로 작성

8) 베른협약 제5조.

9) 저작권법 제46조.



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(21년 6월)저작물은 “공공누리“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